민간위탁 재계약 사유서

※ **2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** 시 사유서 공개

사무명	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
소관부서명	가족다문화담당관
예산 및 위탁기간	272백만원 (‘23년), ’23.1.1~‘25.12.31 (3년)
수탁기관	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
재계약 근거	○ 서울특별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- 제18조 (외국인주민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- 제12조(재계약)
재계약 사유 **(수의협약 사유)**	○ 외국인노동자센터 업무는 외국인노동자 대상 상담·교육 등 지원 업무로서, 사회복지업무 및 외국인에 대한 전문성과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(단체)의 추진이 필요함 ○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은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가 위치한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및 양천외국인노동자센터를 다년간 운영하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성장 및 안정화에 기여해왔으므로, 사업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함

(담 당) 직 급 : 행정 6급 성 명 : 조민지 연락처 : 02-2133-8703

(팀 장) 직 급 : 행정 5급 성 명 : 김용만 연락처 : 02-2133-8701

(부서장) 직 급 : 행정 4급 성 명 : 천주환 연락처 : 02-2133-8680